

# Tax News Flash

## - Transfer Pricing & Customs

November 06 2023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1 이전가격

#### OECD 이전가격지침서의 연관성에 대한 스위스 연방행정법원의 판결

2023년 9월 6일, 스위스 연방행정법원(행정법원)은 스위스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조정을 수행할 때 OECD 이전가격지침서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A-4976/2022)을 발표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과 2016년에 두 특수관계자(B사 및 C사)에게 재무 자문서비스를 아웃소싱한 스위스 상장기업(A사)이었습니다. 스위스 과세당국은 원고의 서비스 관련 비용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이전가격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A사는 2022년 행정법원에 항소하였고, 행정법원은 B사가 제3자에 제공한 유사 서비스에 대한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 방법) 등을 통해 A사의 서비스 대가가 정상가격 원칙에 따라 책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과세당국은 해당 접근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CUP 방법을 포함한 다른 이전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원가 가산법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법원은 OECD 이전가격지침서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절차를 따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적절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법원은 효과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거나 CUP 방법 적용을 위한 비교가능거래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원가가산법 또는 재판매가격방법 등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법원은 OECD 이전가격지침서의 9단계 절차가 스위스 과세당국의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절차가 비교가능성 분석을 위해 일반적이고 일관된 방법론을 제공한다는 견해를 취했습니다.

또한, 행정법원은 과세당국이 비교가능성 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무 자문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제3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보다 비용 효율성이 현저히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행정법원은 과세당국이 CUP 방법 적용을 고려하지 않고 원가가산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OECD 이전가격지침서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전가격 조정 시에는 OECD 이전가격지침상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론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헝가리,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필라 2 입법 제안**

2023년 10월 17일, 헝가리 재무부는 EU 최저한세 지침서(EU Minimum Tax Directive)에 따라 OECD 필라2 모델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 입법안에 대한 공식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입법안은 EU최저한세 지침서, 그리고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된 지침과 유사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산입규칙(이하, "IIR")/소득산입보완규칙(이하, "UTPR"):** IIR은 2023년 12월 31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UTPR은 1년 이후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회계연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최종모회사가 IIR 및 UTPR의 도입을 연기(지침서 제50조)한 EU 회원국에 소재할 경우, UTPR은 2023년 12월 31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내국 최저추가세(이하, "DMTT"):** DMTT는 2023년 12월 31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입법안에 따르면 헝가리 DMTT는 전반적으로 OECD의 적격 내국 최저추가세(이하, "QDMTT") 지침과 일치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헝가리 DMTT 계산 또한 OECD의 QDMTT 세이프하버(Safe Harbour) 지침에 따라 현지 회계기준을 기반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이프하버:** 입법안은 국가별보고서(CbYC) 세이프하버 규정과 QDMTT 세이프하버 규정(다른 관할국에서 QDMTT를 적용하는 경우, 특정 조건 부합 시 헝가리에서는 IIR과 UTPR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또한 포함합니다.

**기타 설명:** 입법안은 현지법령 해석 시 OECD 주석서(OECD Commentary), 글로벌최저한세 이행체계(GloBE Implementation Framework) 및 OECD 이행지침(OECD Administrative Guidance)을 참고하였습니다.

**신고기한:** 각 구성기업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개월(최초 적용연도의 경우 18개월) 내에 GloBE 정보신고서(GIR)를 제출해야 하며, 추가세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 사항 존재)

**추가조치:** 입법안에는 법인세법, 지방소득세법 및 회계법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3 서 7299 (2023.09.25)

**제목:** 청구법인이 쟁점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조사)

### 1) 처분개요 및 주요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000 외식업체 BBB(이하 "BBB")이 글로벌 커피가맹사업을 위해 000에 설립한 법인으로, 2019.10.1. 000법인 CCC 와 그의 자회사(이하 "000법인" 및 "000자회사", 합하여 "000법인들")로부터 "DDD"(이하 "DDD")에 대한 상표권 및 전 세계 커피가맹사업권을 양수하였음
- 한편, 국내가맹점 (주)AAA는 그간 "DDD" 브랜드사용료 등(이하 "쟁점사용료")을 000법인들에게 지급하면서 한·000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다가, 000법인들로부터 "DDD" 상표권 등을 청구법인에 양도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청구법인에게 000 거주자 및 수익적소유자의 지위를 증명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쟁점사용료의 지급을 유보하던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2019.10.1. 이후부터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되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22%)를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한국·000 조세조약에 따르면 쟁점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며 2022.5.4. 기 원천징수된 세액 000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함
-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사용료에 대한 수익적소유자 및 실질귀속 자의 지위가 불분명하다며, 2022.12.1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8. 심판청구를 제기함

### 2)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3)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p>1. 청구법인은 글로벌 커피가맹사업을 영위할 의도로 000에 설립(2019.8.22.)된 실체가 있는 독립 법인격체로, “DDD” 상표권과 가맹사업권을 적법하게 양수(2019.10.1.)한 이래, 현재까지 그 권리를 배타적으로 소유하면서 정당하게 사용·수익하고 있는 쟁점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임</p> <p>1) 청구법인은 설립 후, 000 국적의 변호사 및 재무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여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코로나사태 등으로 사무실 임차 자체가 불가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사무실임차비 등 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모두를 직접 부담하는 등 인적·물적시설을 구비하고 있음</p> <p>2) 청구법인은 가맹사업자로서 제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을 작성하면서, 독립적인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쟁점사용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000 과세당국에 세무신고를 하고 있음</p> <p>3) 청구법인은 이사회결의를 포함한 사업의 핵심사항에 관한 모든 결정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고, 이사회 구성원들 모두 역할 수행을 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고 있다. 또한, 코로나사태 등으로 일시적으로 비대 면회의가 있었던 적을 제외하면, 대부분 000에서 개최된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고 있음</p>	<p>1.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를 독립적으로 완전하게 지배·통제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을 쟁점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음</p> <p>1) 청구법인은 기본적인 물적·인적시설은 물론,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회구성원 대부분이 모회사 소속이므로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그간 이사회는 비대면으로 개최되었을 뿐, 청구법인의 소재지에서 실제 개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주요 업무인 사용료의 청구, 배분, 정산 등도 모회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단순히 000에 설립되어, 전세계 가맹점들을 상대로 사용료 등을 수취하는 기계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가맹사업에 필요한 핵심업무(사용료 정산 등)와 그에 대한 의사결정은 모회사가 직접 수행하였음</p>
<p>2. 상표권은 청구법인의 소유이고, 실질적인 가맹사업도 청구법인이 영위한 이상, 한국 내 가맹본부의 형식적 등록상황에 따라 쟁점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의 지위가 변경된다고 보기 어려움</p> <p>1) 한국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여 가맹본부로 등록하여야 하나, 정보공개에 필요한 일부 사항에 대해 AAA의 비협조로 한국 내 가맹본부로 등록할 수 없었기에, 기존 한국 내 가맹본부로 등록되어 있는 000법인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의 명의를 한시적(청구법인이 가맹본부로 등록될 때까지)으로 빌려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 그러나 000법인들은 가맹사업과 관련한 실질적 역할은 없었고 단지 명의를 빌려준 격임</p>	<p>2. 청구법인은 AAA의 가맹본부는 물론, 쟁점사용료의 수취권자가 될 수 없음</p> <p>1) 청구법인은 상표권 등을 000법인들로부터 양수하였으면서도, 다시 000법인들과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상표권 및 가맹사업권에 대한 000자회사의 사용을 허여)을 체결하여 한국 내 가맹본부의 지위는 여전히 000자회사가 유지하고 있었고,</p> <p>2) 청구법인은 AAA의 비협조로 정보공개가 불가하여 가맹본부 등록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2020.7.9.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000자회사가 전세계적인 가맹사업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AAA도 국내 가맹점포 현황 등을 청구법인이 아닌 000자회사에게 보내고 있음</p>

#### 4) 판단

- 처분청은 쟁점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 및 실질귀속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특정 재산(상표권 등)의 소유 여부나 그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그 명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다만,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커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려면, 이는 그 사실(명의≠실질)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 청구법인은 일견 000 법령에 따라 설립된 독립된 법인격체이자 동시에 000의 거주자로 보이는바, 외관상 사업주체로서 법적형식을 갖추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를 배척하려면 보다 명확한 증빙이나 처분근거 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쟁점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의 지위가 불분명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할 뿐, 쟁점사용료의 최종적인 수익적소유자(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특히 청구대리인은 2023.9.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한국가맹점인 AAA 외에 다른 나라(000 및 000 등)에서 영업 중인 현지가 맹점들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000와 체결한 조세 조약을 적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사용료의 명이상 소득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배척하기 위한 명백한 반증이 제시되지 않은 채, 단지 추정 근거하여 청구법인을 도관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이 인정됨
- 다만, 청구법인은 000에 형식적으로 설립되어, 보여주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 물적·인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고, 글로벌 커피 가맹본부로서의 실제적인 역할이나, 가맹사업을 실제로 수행한 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아, 그 실체가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있고, 청구법인대리인의 진술 또한, 구체적 증빙이 제시되었거나, 처분청의 확인 등이 동반된 것도 아니어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임
-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법인대리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과 더불어 쟁점사용료가 최종적으로 누구(청구법인, BBB, 000법인, 000법인, 000법인들)에게 귀속되었는지 등 쟁점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 및 실질귀속자를 밝힐 수 있는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03 관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2 관 0142, 2023.09.22

제목: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에게 상표 사용·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판매할 권리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가 부착된 의류와 액세서리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수출자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쟁점상표의 사용과 쟁점상표가 부착된 물품(이하 "BBB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할 권리를 허여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수출자에게 분기별로 순 매출액의 000%를 권리사용료(이하 "쟁점로열티"라 한다)를 지급하기로 하였음
-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쟁점로열티 금액을 잠정적으로 신고하였다가, 2019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확정된 쟁점로열티의 금액을 가산(수정)하여 확정가격신고를 함.
- 그 후 국세청은 청구법인 세무조사에서 2020.10.29. 청구법인에게 쟁점로열티가 업무와 무관한 상표권사용료이므로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라 손금 불산입하겠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부과함
-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2.5.20. 처분청(구 000 장)에 위 국세청의 부과처분을 근거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서 쟁점로열티에 해당하는 관세 000 원 및 부가가치세 000 원 합계 000 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과세관청은 거부하였으므로 2022.8.25 조세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음

### 2) 쟁점

- 로열티에 대한 국세와 관세의 시각 및 이중과세 해당여부

### 3) 조세심판원 판단

- 쟁점합작투자계약상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고, 이를 대가로 쟁점수출자에게 쟁점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어,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의 지급 없이 쟁점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3자로부터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그러한 실적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관세와 내국세는 과세목적·과세대상·과세표준·세액산출방법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에 의하여 과세되므로 내국세법에 따른 내국세의 부과가 관세 부과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8. 선고 2016누35610 판결 및 재정경제부 관협 47040-310, 2001.12.29. 등), 국세청이 쟁점로열티에 대하여 손금 불산입하였다고 하여 관세법령상 과세요건인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주)AAA 및 전 세계 수입업체들이 권리 사용료의 지급 없이 BBB 제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조건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이를 근거로 쟁점로열티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KPMG 의견]

청구법인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관세와 법인세를 중복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이러한 중복과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며 과세를 하더라도 1 개 기관에서만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반해 동 조세심판원 결정은 관세와 내국세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액산출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국세의 부과가 결코 관세부과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중과세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즉, 국세청에서는 쟁점로열티의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을 따진 것이 아니라, "업무와 무관한" 상표권이므로 "손금불산입"을 통한 과세가격을 산정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며 관세청에서는 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을 따져 가산요소로 판단을 한 것이다.

동 사례는 무조건적인 내국세 부과 = 관세의 환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을 시사하는 의미 있는 사례이다.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https://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https://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